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2021년 1월 15일(수) 오픈 예정]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 상담 전화 빠른 안내 ('21. 1. 4.부터 운영) 》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1년 1월 15일(금) 오픈될 예정**(**2021년 1월 20일(수)**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입니다.**※ 확정 소득자료 2021.1.20.(수)**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1.1.20.(수)~1.26(화)까지

▶ 홈텍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1. 1. 15. (금) 오픈 예정

▶ 2021년 1월 20일(수)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받아 입력 권장

▶ 2020년 연말정산은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업로드로 진행 합니다.

☞ 장기 해외체류로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저장후->학교기관메일(bongseo.korea.kr)로 보내주세요

☞ 입국후 증빙서류는 바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해주세요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1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연말정산일정

업무담당자	(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사용기관정보관리: 주소등 확인)
↓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대상자선정** (급여>연말정산>대상자관리)
↓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급여>연말정산>대상자관리)
↓	
업무담당자 및 근로소득자	**보수총액 확인(기타소득 입력)**
↓	
근로소득자	2021.1.20.~2020.1.26.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 - 2021.01.15.(금):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	
근로소득자	2021.1.26까지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세금 계산 (급여>연말정산>급여연말정산처리)(2021.01.29.(금)까지)
↓	
업무담당자	2월급여 반영 (월급여 일괄작업 수행시 2월 급여 자동반영)
↓	
업무담당자	연말정산 과세자료(전산매체) 제출 (국세청 홈택스, 2021.03.10.까지) -교직원 및 공무직원 등: 학교 작업 및 제출
↓	
업무담당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2021.03.10.까지) -교직원 및 공무직원 등: 학교 작업 및 제출

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금종류	비고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	418-82-64064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교원단체총연합회	402-82-13726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7-82-06408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공무원노동조합	해당고유번호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전라북도교육청	116-82-14692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40)	해당자 입력
국군장병위문금	116-83-00138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불우이웃돕기등 전북교육청	418-83-00179	법정기부금(10)	해당자 입력

2.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및 나이스등록방법

1. 개인별 정산공제자료 등록(개별 당사자 입력)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

▶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방법→홈텍스 상단 로그인 클릭→공인인증서등록→주민등록번호입력→등록하기→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확인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2020년 연말정산부터 사설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귀속년도 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로 저장(비밀번호 없이, 파일명은 2020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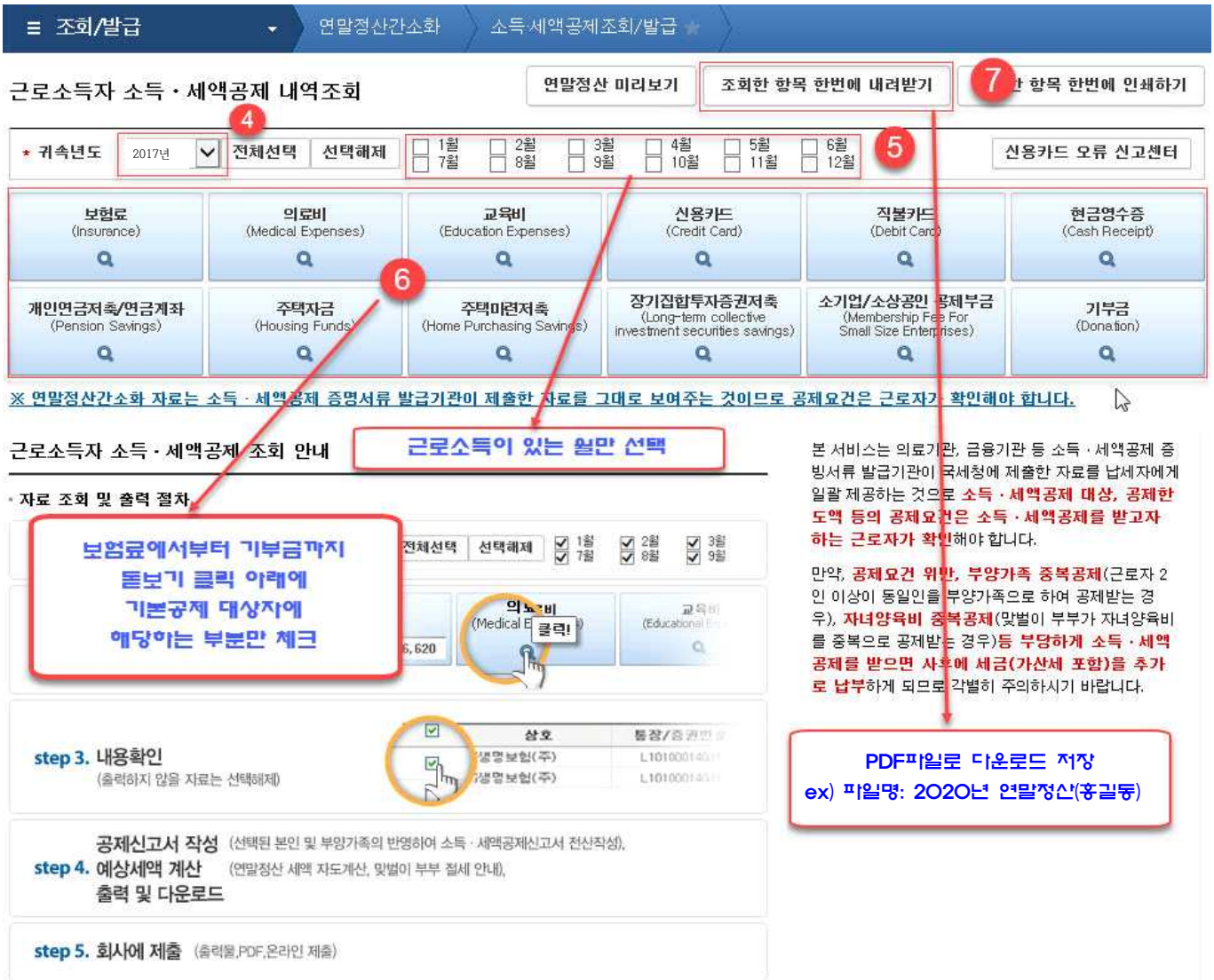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pdf) 업로드

○ 나이스 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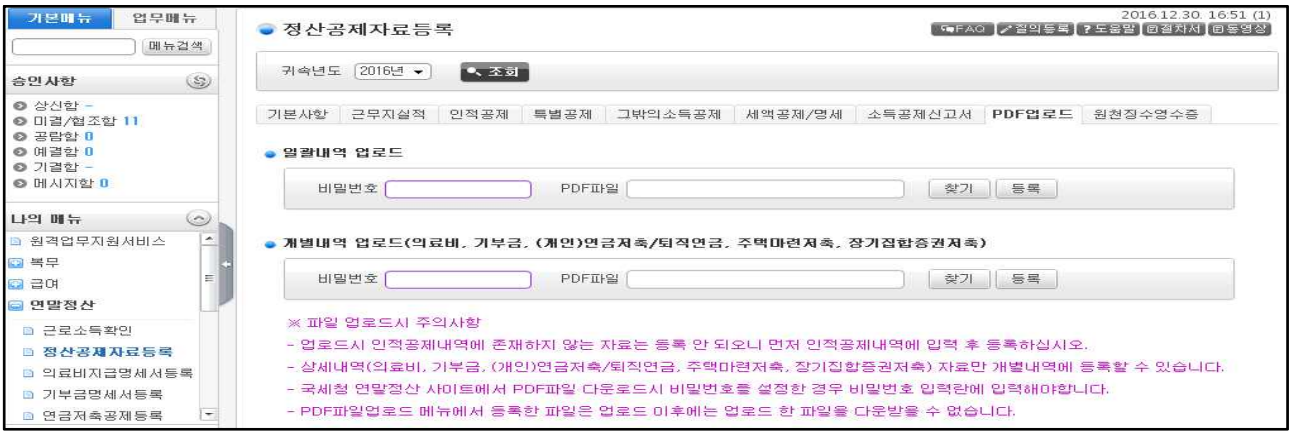

-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파일업로드(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나이스에 업로드한다.
-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국세청 PDF파일을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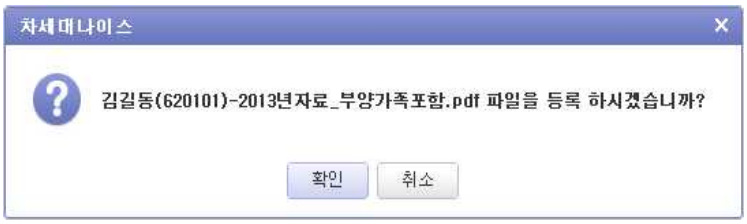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했을 경우 비밀번호 입력 후 등록한다.(되도록 비번설정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제출요청,작업이 잘못된 경우 다시 작업하려는 경우 대비)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한 전자파일을 일괄내역 업로드에 업로드함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세내역 업로드도 가능하다.(업로드시 기관 담당자가 의료비 등을 일별로 확인가능.
- 업로드 이후 각각의 탭 에서 업로드된 내역을 확인한다.

○ **PDF 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및 추가 등록**

①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② 업무담당자가 등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 2020년도 정산공제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③ **세대주 : 본인의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등록한다.=>주택관련 공제 및 월세액공제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처음에 입력 꼭 확인**

④ 근무기간 :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이 조회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작일은 2020.01.01. 일이 종료일은 2020.12.31 일이 반영된다.

▶연도 중간에 신규임용 및 퇴직한 경우 인사기록의 현기관임용일, 퇴직일이 반영된다.

⑤ 기타소득 : 급여업무담당자가 기타소득으로 등록한 내역이 조회된다.

○ **인적공제**

인적공제자료는 최초 연말정산 기초자료생성 시 월급여의 가족사항에서 반영되나, 이후 변동사항은 직접 수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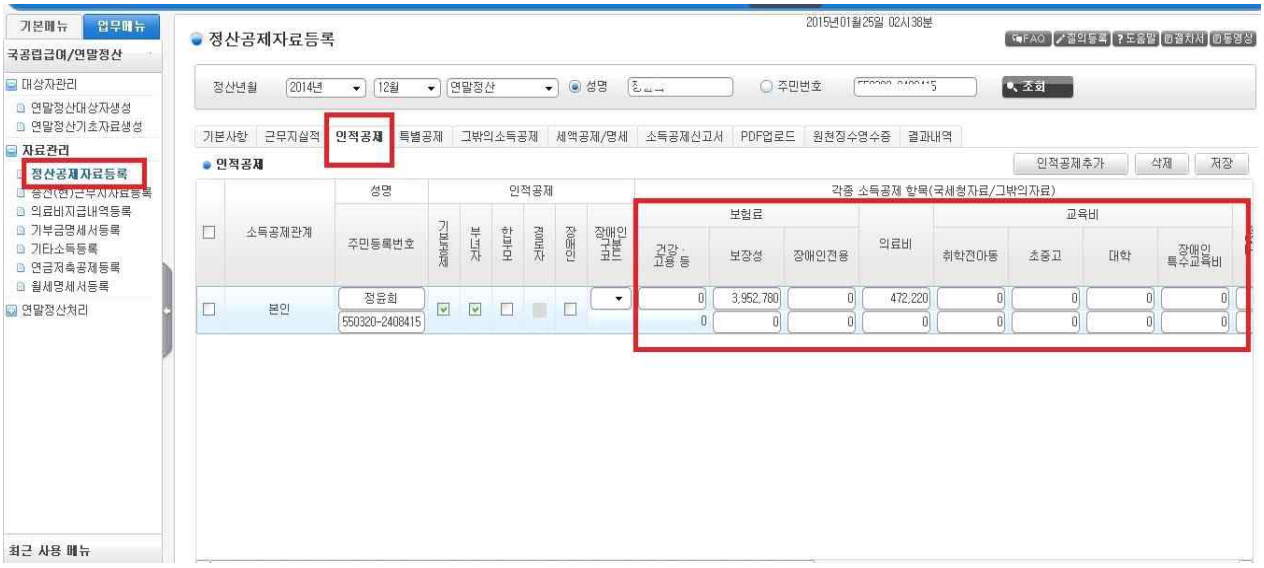

①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인적공제추가] 버튼으로 작업하고, 필요시 개인별로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다.

②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③ 인적공제사항의 소득공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공제항목, 각 가족별 소득공제항목을 입력한다.

- **인적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자(1950.12.31**.이전 출생자), **7세이상(2013.01.01**. 이전 출생자), 출산·입양, 장애인, 장애인구분코드를 선택한다.
- **보험료** : 부양가족별 보장성보험, 장애인보험 지출 금액을 등록한다.
- **의료비, 교육비** : 부양가족별 의료비, 교육비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등 : 부양가족별 각각의 내역을 등록한다.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
- **기부금** : 부양가족별 기부금 지출금액을 등록한다.
  ※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제외하고 등록한다.

■ **인적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를 등본과 확인해서 20세이하 60세이상인지여부(나이조건)와 소득조건을 확인한다.
   또한 추가공제대상자인 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중에 추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하는것이므로 주의
2. 장애인은 장애인증,경노우대자는 70세이상,부녀자는 3천만원 연간소득이하인지여부를 확인
3. **다른가족을 기본공제로 하되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려면 홈택스 상단에 조회동의를 클릭 세부사항을 입력하고 인증방법을 전화,신용카드,인터넷등으로 선택 확인절차를 거쳐 인정되면 본인 간소화 자료조회시 함께 조회 가능하다**
4. 본적이 다르나 시골에 계신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건 이체자료등을 통해 입증가능하고 형제가 중복으로 부모를 공제 신청하는 경우 실제부양을 입증하는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는다. 결론적으로 등본상 동일주소가 아니어도 부모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공제가능하고 세무서에서 검사해서 부양자료 제출하라고하면 이체자료등 확보한다.물론 본인책임^^
5. 다자녀추가금액이 세금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직계존속이아닌 직계비속으로 입력했는지 확인
6. 7세이상 자녀 인적공제가 체크되지 않는 경우 직계비속 체크하고 주민번호가 올바르면 자동으로 반영
6. 월급여 100만원이상인지 확인해서 넘으면 공제 불가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는 상대방을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다

구분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금액	333만원	100만원	100만원	1천만원	300만원	2천만원	516만원	1천2백만

7.**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체크한 사람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등이 공제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지출한건 공제할 수 없다.**

8.다만 교육비는 나이제한이 없고 의료비는 나이,소득제한이 없으므로 20세넘은 자녀를 위한 등록금은 공제가능하고,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지는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과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되 기본공제사항을 체크해제한다.

9. 의료비,교육비는 나이제한요건이 없으므로 부양가족인경우는 20세넘은 자녀를 위한 의료비나 대학교 수업료는 공제한다 다만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하고 부양하지않는 가족은 공제할 수 없다.

구분	나이조건	소득조건	비고
의료비	x	x	나이소득조건없이 기본공제자가아닌 부양가족을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을 공제가능
교육비	x	0	나이조건이 안맞아 기본공제가안돼도 자녀를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가능
보험료,주택자금,월세등	0	0	본인부담부분만 공제가능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등 ,주택자금**

특별공제 탭에서는 주택자금 및 기부금(이월분)을 등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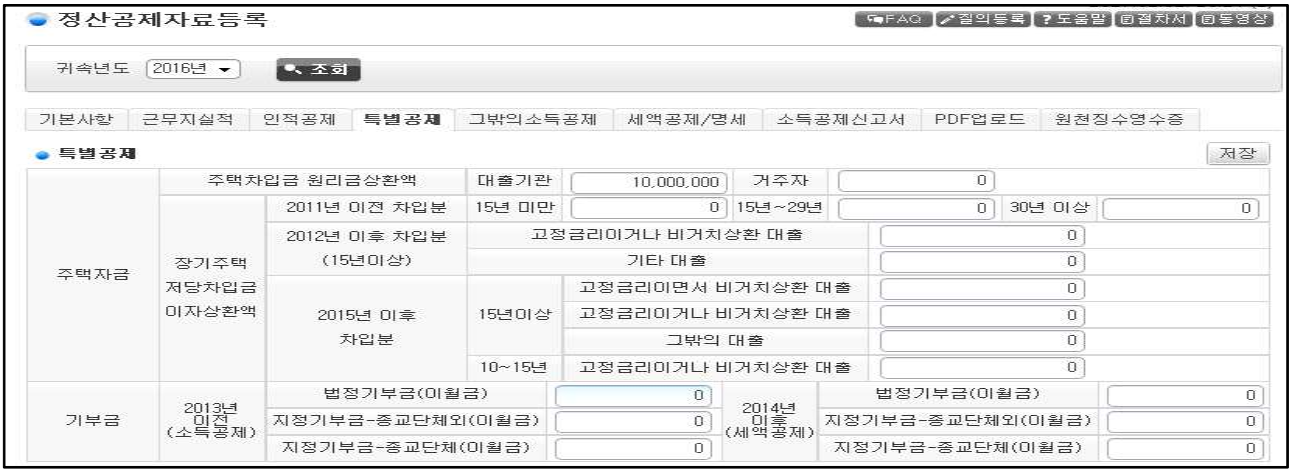

가.**건강보험, 고용보험** : 정규직은 나이스에서 자동으로 산정되며,교육공무직과 기간제교사는 앞에서 자료입력한 것이 반영된다

나. **주택자금**

1)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2)주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거주자)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1년 이전) : 대출기간에 따라 입력한다.

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2년 이후)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5)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15년 이후) : 2015년 이후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비거치상환, 기타대출로 나누어 입력한다.

다.기부금(이월분) : 2013.12.31.이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지출액을 입력한다.

1)2013년 이전 기부금이월액은 소득공제 대상

2)2014년 이후 기부금이월액은 세액공제 대상

※ <u>이월금이 아닌 2020년 귀속분은 세액공제에 입력한다.</u>

3)**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 종전 당해년 기부금산입하고 이월기부금 산입하던 것을 이월기부금을 먼전 산입하고 당해년 기북금을 산입하여 순서를 조정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청약저축등 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그 밖의 소득공제 탭에서는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기타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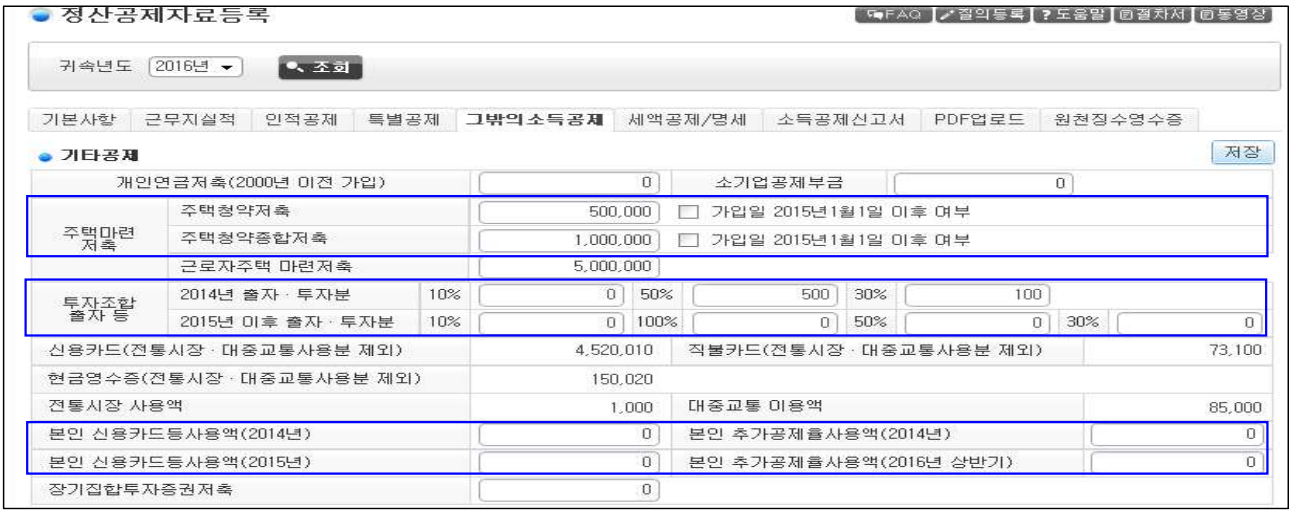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이전	2001.1.1.이후
납입기간	10년이상	5년이상(13년이후납입시)
소득공제	연납입액 40%	연납입액 12%
공제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1.서로 잘못입력하였는지 확인

2.수동으로 납입확인서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시 공제불가이므로 확인하고 본인명의 인지 확인

3.**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월세등은 명세서 조회후 누락없는지 확인해서 누락분 등록하고 자동계산 버튼을 눌러야 공제금액이 자동입력되고 나중에 홈택스 신고시 오류나지 않는다**

■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

1.주택을 보유하지않은 세대주가 주택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 세대주여부(등본확인)/무주택여부/주택마련 임차확인(등기부등본,대출계약서,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되 한도가 300만원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신용카드**

1.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만 적용
   중도 신규채용된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해서 근무기간 사용액만입력
2. 형제자매 경우
   형제자매카드 사용액은 불가
3. **코로나19등으로 인해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등	30%	60%		30%
전통시장등	40%	80%		40%

4. 신규차량 구매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 아니지만 중고차구매시 10%를 신용카드 공제대상으로 포함
5.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

구분		특별세액공제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학원비	취학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교복구입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기부금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능**

○ **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 탭에서는 세액공제 내역을 등록하고, 세액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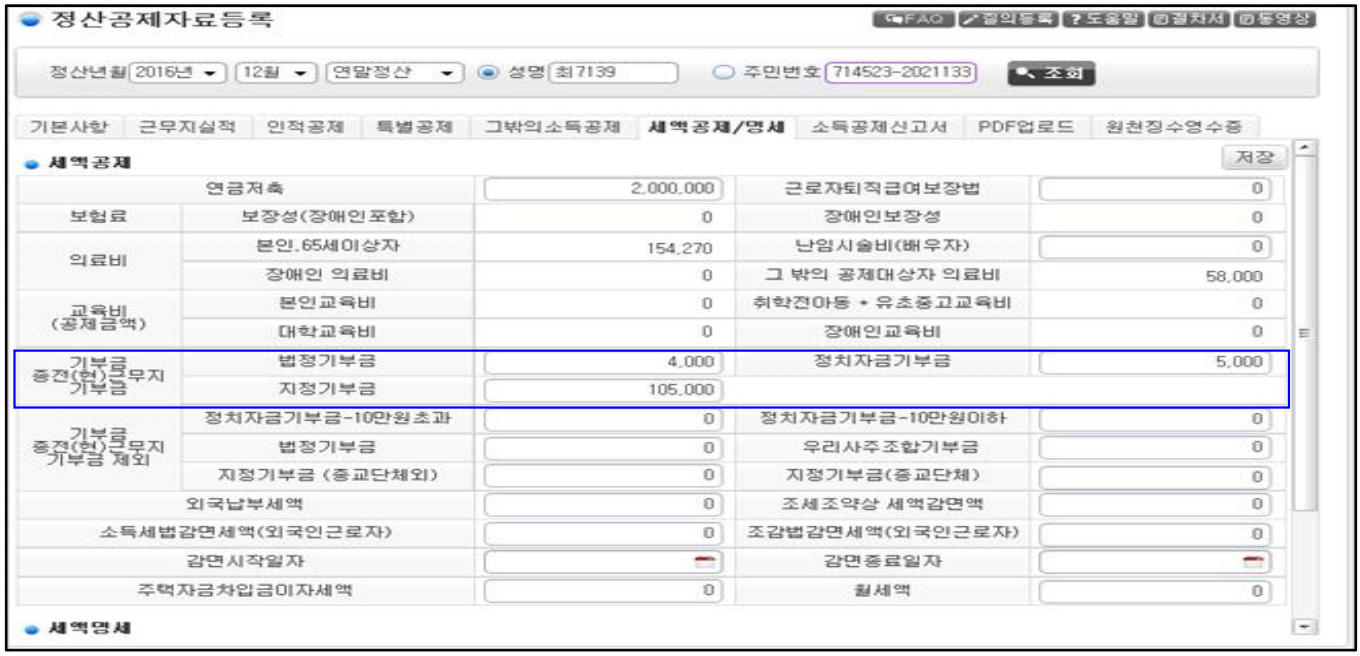

가.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구분

1) 연금저축 : 연 400만원 한도로 과세기간 납입한 연금저축액의 12% 세액공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 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금은 연금저축과 합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한다.단 총급여 5,500만원이하는 15%

3) **50세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종합소득금액(총급여)	50세미만	50세이상	공제율
4천만원(5.5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이하(1.2억)			12%
1억초과(1.2억)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나.**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인적공제에서 등록된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1)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장애인 보험료 포함

2)의료비 : 본인·65세 이상자, 장애인, 그 밖의 공제대상자, 난임시술비로 나누어 조회됨

※ 난임시술비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난임시술비만 입력하며, 본인 난임시술비는 본인 의료비에 포함하여 입력한다. (본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하며 20년 귀속연말정산에서는 공제율을 20%까지 상향했다

3)교육비 : 본인, 대학, 장애인, 취학전아동+유초중으로 나누어 조회됨

4)기부금 종전(현)근무지 기부금 : 나이스에서 공제된 기부금 자동 입력 됨

단, 기부금 종전(현)근무지 기부금 제외 : 나이스에서 공제된 기부금 외 개별 기부한 내역 입력.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등록 불필요

다. 외국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을 입력한다

라. 조세조약상 세액감면액 : 원어민교사 등 교직자의 세액 감면액을 입력한다.

1)**20년 귀속분에서는 종래 17% 단일세율을 19%로 상향하고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기한 연장**

2)원천징수영수증 50번 항목 산출세액을 입력

3)감면시작일자, 종료일자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기간을 입력한다.

마. 월세액 : 월세 지급액을 입력한다.

총급여 7천만원이라 무주택 세대주가 과세기간 납부한 월세를 연750만원까지 10%공제하여 75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 **의료비(소득요건·나이요건 제한 없음)**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하는 것을 말함.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도없이 전애 소득공제가 가능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매출전표를 의료비 증명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카드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의료비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란?
기본공제 대상 나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그러나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근로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형제들은 부담한 수술비를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님은 본인이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부모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는 공제

○ 다만 인적공제자로 추가하고 나이 등 요건으로 20살 넘은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한다
인적공제자로 추가하되 나이요건 등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녀나 부모는 기본공제 체크를 해지하고 다만 의료비를 이를 위해 본인이 지급한 금액을 입력하고 공제
다만, 이 경우는 실제 가족을 부양하는 부모나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경우 해당

○ 부양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안됨

○ 의료실비보험등이나 회사나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등으로 다시 보상받는 의료비는 결국 자신이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 안됨

○ 기본공제대상 가족이라도 소득요건에 걸려 100만원 이상 소득자면 공제 안됨

< 주의>
맞벌이 부부 경우 아내가 자녀를 기본공제로 가져가서 기본공제 체크하고 의료비를 입력안하면 남편이 자녀를 인적공제에 추가하고 기본공제는 해지하고 의료비만 입력해서 남편이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한가?
→ 국세청답변은 안됨 ,기본공제받는사람이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해야지 기본공제와 의료비만 찢어서 공제불가

■ **교직원 교총회비등**

1. 국공립급여>자료관리>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세금/기부금탭
   지정기부금에 교총회비 납부자들 11,500원씩 입력되있는 것 확인
2. **교총회비는 급여에서 공제되고 종전근무지자료에서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내역에 반영되어있으므로 세액공제탭에서 지정기부금액 넣을 때 교총회비 138,000원를 빼고 넣어야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하면 지정기부금액이 교총금액만큼 중복되지않고 나타난다**
3. **전교조가 법정단체가 됨에따라 2020년 납부액에대해 납부영수증 제출받아 나이스 입력(2020년 이전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가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

■ **기부금입력**

1. 전입자 있으면 타학교에 급여자료 및 기부금자료 요청
2. 급여에서 공제되는 자료는 pdf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반영되어 기부금명세서 탭에 등록된다
3. 기타 **국군위문성금**(116-83-00138 국가보훈처)등은 직접입력 ,**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 빼고 숫자만 입력해야 오류없음**
4. 기타 수기로 가져온 기부금자료 입력
5. 수기자료는 **법인설립허가증,소속확인증,교회등 사업자등록증,기부금명세서**를 받도록 한다
6. 등록후 출력해서 정산자료등록>인적공제>기부금에서 상단은 전산자료입력하고 하단은 수기입력자료 금 액을 입력한다
7. **정산자료등록>세액공제/명세에서 법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입력하고 지정기부금입력할 때 교총회비 138,000원은 빼고 지정기부금 입력**
8. **원천징수영수증탭에서 법정기부금외 지정기부금란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아까 세액공제에서 지정기부금을 교총회비안빼고 입력하면 원천징수탭에서 지정기부금이 그 금액만큼 증액해서 입력되므로 주의한다.
9.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10 이월된 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에서 현년도 기부금은 세액공제에서 입력

11.이월된 기부금은 법정,지정기부금은 **10년 이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문: 전주 풍남문 광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모집 안내 기관명: 사단법인 겨레하나 고유번호: 402-82-23957 2. 공문: 2015년도 연말연시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요청 기관명: 국가보훈처 고유번호: 116-83-00138 3. 공문: '희망2016 나눔캠페인' 성금모금 협조 요청 전화 282-0606 유의사항: 나이스에 기부금 기관 고유번호 입력시 "-" 입력 금지, 숫자10자리만 입력

■ **근무기간중 지출한 것만 공제하는 것(기부금외 전부)**

○ 교제 앞부분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요건표 하단에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옆에 근로기간중 지출한 것에대해 공제한는것들을 0표해놓았는데

○ 기부금 제외하고 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보험료등 근무기간중 지출한것만 공제하고 기부금만 12개월 지출한 것 모두 공제

○ 즉, 중도입사자,신규,군복무후 복직증 연도중 근무하거나 년도중 퇴직자는 근무기간중 지출한것만 공제하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별로 조회해서 근무기간 사용맥만 입력

■ **보험료**

1. 4대보험 자신이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2.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이 있는데 소득공제대상은 보장성보험만 해당하므로 확인필요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것이고 보장성보험은 원금보다 적지만 손해발생시 보장사항이 많은 보험을 의미)
3. 보험료공제는 가입자보다 수혜자가 누구인지가 중요,즉, 기본공제대상자를 수혜자로 되어있는지 확인
   ○본인명의로 본인 수혜자로 가입한 보험에 대한 공제하거나 본인이 계약자로 기본공제대상자를 수혜자로한 보험에 대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이라도 본인이 실제 지불한 건 공제가능
   ○ 하지만 계약자가 나이요건,소득요건을 충족하지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실제 납부했어도 공제대상 아니다.
4. 맞벌이부부 경우 본인이 계약자고 수혜자가 아내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불가하지만 예외로 수혜자를 부부공동으로 한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
5. 본인이 계약자로 하고 수혜자를 만20세가 넘는 자녀나 형제를 수혜자로 하는 경우 공제대상아니다.
6. 기본공제자였으나 이혼 별거 취업등으로 중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된 경우는 그기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다

순위	계약자			수혜자			공제여부
	본인	기본공제	비공제자	본인	기본공제	비공제자	
1	0			0			0
2	0				0		0
3	0					0	x
4		0		0(지출시)			0
5		0			0		0
6		0				0	x
7			0	0			x
8			0		0		x
9			0			0	x

■ **교육비(소득요건0, 나이요건x)**

1. 본인이 본인을 위해 교육비 지출분 전액공제(대학 대학원까지)
2. 본인이 직계존속을위해 교육비로 지출한건 공제안함
3.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하는데 나이 20살초과한 자녀등 경우 인적공제에 추가하되 기본공제 해지하고 본인이 대학생 자녀등 위해 지급한 금액을 입력 공제
4. 초등학생등은 교육비 납입증명으로 자료가 올라오고 학원비등은 초중고는 공제x, 미취학아동만 가능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인적공제 내역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하여 적용 가능
→ 소득공제 받고 싶은 인적공제가 먼저 등록 되어 있어야함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합니다.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입력시 유의 사항 ☜

1.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
   → 홈텍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야함(홈텍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
   →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

2. 홈텍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 750308-1234567 →7503081234567

2. 의료비,기부금,연금,월세지급명세서 자료등록

1.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2) 의료비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의료비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한다.
3)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출력할수있고 사인해서 행정실에 제출

2. 기부금명세서 등록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기부금명세서탭]
2) 기부금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3) 해당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금구분, 기부자관계, 기부자성명, 기부자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저장한다.
4) 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10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한 금액만 등록**한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급여에서 공제한 기부금은 등록하지 않는다**.
6) 기부금명세서를 출력사인한후에 행정실 제출한다.

3. 연금저축공제 등록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2) 연금저축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본인의 연금저축 지출내역을 등록하여 제출한다. 해당 명세서는 연금저축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신고 시 포함되어 신고된다.
3) 해당 연금저축의의 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증권번호), 불입금액을 차례로 입력한다.
4) 공제금액 자동입력을 눌러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저장한다.
   연금저축은 나이스에서 연금저축목록에서 자동계산눌러야 세액이 입력된다. 안누르면 오류뜸
5) 연금저축명세서를 출력 사인한후 행정실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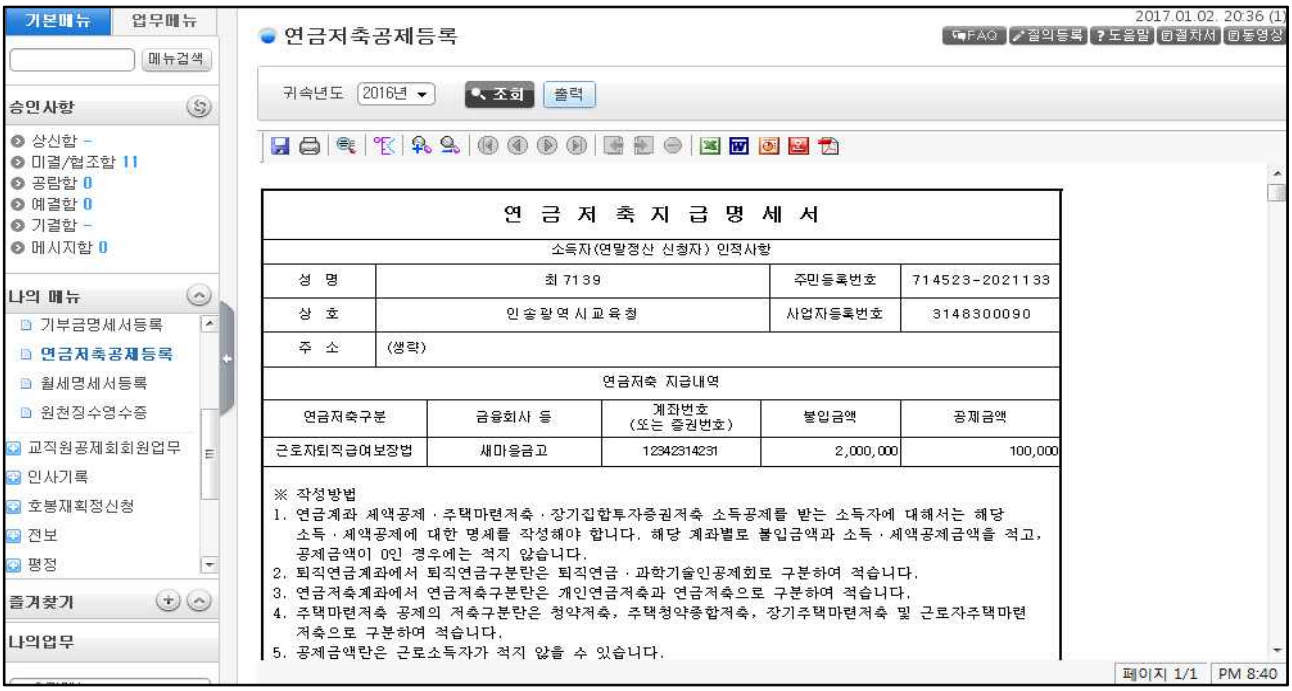

4. 월세명세서등록

1) 메뉴위치 :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
2)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3)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월세액 탭을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4)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는 아래 탭에 내용을 작성한다.

5)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적으며,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는다.
6)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7) 공제금액은 월세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된다.

증 빙 서 류 제 출

제출기한	2021년 1월 26일(화)	
입력기간	2021년 1월 20일(수) ~ 1월 26일(화)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	방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소득공제신고서탭 → 귀속년도(2020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0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0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수기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사본X, **원본**으로 제출) -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꼭 포함 - 고유번호증 같이 제출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연금저축공제등록 → 귀속년도(2020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월세명세서등록 → 귀속년도(2020년) → 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발급분)	**전교직원**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⑦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전교직원**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 귀속년도(2020년)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기타 증빙서류 제출(인적공제, 장애인 증명서 등)
⑧ 서약서	**전교직원**	[붙임 1] 작성 후 출력 서명 제출

[붙임1]

서　　약　　서

소　속 :　용북중학교
직　급 :
성　명 :

본인은 2020년도 연말정산시 부양자 기본공제(소득 유.무),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약국, 병원, 종교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서류 착오 제출 시 정산 후 세무서장이 기관장에게 통보함)

2021년　1월　　일

신청인 :　　(인)

용북중학교장　　귀하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법 §12)

<개정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종 전	개 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소득법 제59의 2)

<개정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삭제)	▢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③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 (소득령 §79)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종 전	개 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소득규칙 §58)

<개정이유>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제165, 제174의 3)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적용시기> 20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조특법 제126의 2)

<개정이유>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20.3.23.)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구분 /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22.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 동)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구분 / 3월 / 4~7월 / 8~12월: 신용카드 30% / 80% / 15%, 현금영수증 등 60% / 80% / 30%, 전통시장 등 80% / 80% / 40%) ○ (좌 동)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조특법 제95의 2, 제122의 3)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종 전	개 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좌 동)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 : 월세액의 10%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 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

	추가 수집·제공 자료	수집처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토지주택공사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신용카드사 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회사 등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등